

구상금 청구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소 000000	사건유형	구상금
원고	◇◇◇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2016. 6. 15.	비고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11. 2. 16:30 ◇◇여중 방과후 교육활동 방송댄스 수업 중 소외 ◇◇◇이 춤을 추다 중심을 잃고 앞에 있던 소외 ○○○을 뒤에서 잡고 함께 넘어져 피해자 ○○○의 안면부가 교실 바닥에 충격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 - 소외 ◇◇◇의 모가 가입한 자녀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는 소외○○○의 모에게 6,783,670원을 지급하였음. - 학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실바닥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학교를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는 관리청으로서 최소 70%이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 제기.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는 원고에게 4,748,56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방과후 수업의 내용이 방송댄스 수업인 사정에 비추어 강화마루 바닥 위에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피고측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방송댄스 수업 중이던 학생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앞쪽에 있던 다른 피해 학생을 붙잡아 함께 넘어지게 된 이 사건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사고 당시 담당교사가 수업 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담당교사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